

2016. 10. 12. 10:00
제24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임동화 · 나상권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달성공단 내 기업체들에 대해 우리군에서 부지를 제공하여 대구시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기업체 근로자 보육가정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코자 함

4. 주요내용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

■ 어린이집 개요

- 시 설 명 : 비슬어린이집(가칭)
- 위 치 : 달성군 유가면 봉리 600번지
- 시설규모 : 대지면적 660㎡, 건축연면적 800㎡, (지상 3층)
- 건축주(대표기업) : 대동금속(주)
- 참여기업 : 대동금속외 21개사
- 시설전립비 : 2,010백만원
(대구시 250,000천원, 근로복지공단 1,500,000 기업체 260,000)
- 의무운영기간 : 7년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붙임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부.
2. 2016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1부. 끝.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취 득	계		22(102)	144,632.92	51,430,859	1	800	2,010,000	23(102)	145,432.92	53,440,859
	1.매입	토지	9(102)	129,404	11,778,596				9(102)	129,404	11,778,596
		건물	11	3,141.66	664,263				11	3,141.66	664,263
	2.교환										
	3.기타	토지									
		건물	2	12,087.26	38,988,000	1	800	2,010,000	3	12,887.26	40,998,000
처 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5.양여										
	6.교환										

2016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					주 소	성 명	
1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28-1	1,038	1,038	283,685,400	2016년	군청사 주차장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봉동길 10	문영달	2015.12. 의회 의결
2	장	대	논공읍	금포리	1328-2	553	553	263,338,600					
3	전	대	논공읍	금포리	1328-3	42	42	17,131,800					
4	전	전	논공읍	금포리	1326-2	165	165	43,725,000					
5	구	전	논공읍	금포리	1326-3	177	177	46,905,000 (인근토지 공시지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320, 108동 1507호 (상인동, 보성은하아파트)	문정훈 (문영달 의 子)	"
6	전	전	논공읍	금포리	1326-4	329	329	89,027,4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봉동길 10	문영달	"
7 (건물)	대전	장	논공읍	금포리	1328-1 1326-2	561	561	100,620,000					
8 (건물)	장	대	논공읍	금포리	1328-2	195	195	53,235,000					
9 (건물)	장	대	논공읍	금포리	1328-2	84.5	84.5	30,504,500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					주 소	성 명	
10	학	학	하빈면	대평리	217-3	6,175	6,175	956,507,000	2016년	민속예 술단체 전수관 및 생활문 화공간 조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대구 광역시교 육감	2016. 5. 의회 의결
11	답	학	하빈면	대평리	303-6	40	40	1,928,000					
12	답	학	하빈면	대평리	304-1	547	547	29,264,500					
13	답	학	하빈면	대평리	304-2	1,072	1,072	57,352,000					
14	답	학	하빈면	대평리	304-5	51	51	2,315,400					
15 (건물)	학	학	하빈면	대평리	217-3	659.3	659.3	182,606,600 (시가표준액)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6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05-3	1,228	1,228	519,566,800	2016년	군청사 주차장 및 주민센터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강로16길 30-9	(주)부성리 사이클링	2016. 5. 의회 의결	
17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05-4	360	360	152,316,000						
18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07	1,570	1,240	524,644,000						
19	전	잡	논공읍	금포리	1425-3	1,007	1,007	448,517,800						
20	전	잡	논공읍	금포리	1425-20	224	224	99,769,600						
21	전	잡	논공읍	금포리	1425-21	20	20	8,908,000						
22	임	잡	논공읍	금포리	산29-3	411	411	172,209,000						
23	임	잡	논공읍	금포리	산29-10	20	20	8,380,000						
24	전	대	논공읍	금포리	1303	780	780	226,200,000				김숙화		
25	대	대	논공읍	금포리	1304	873	873	365,787,000						
26	전	장	논공읍	금포리	1308	437	437	175,499,200						
27	장	장	논공읍	금포리	1308-3	1,189	1,189	498,191,000						
28	임	장	논공읍	금포리	산34	444	444	186,036,000						
29	전	장	논공읍	금포리	1309	571	571	143,035,500				김기영 외2		
30	구	잡	논공읍	금포리	산50	229	229	95,951,000				농림축산식품부 국		
31	도	잡	논공읍	금포리	2394-22	34	34	14,246,000				건설교통부 국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주 량 (㎡)					주 소	성 명	
32 (건물)	대	대	논공읍	금포리	1304	173.78	173.78	3,103,000 (시가표준액)	2016년	군청사 주차장 및 주민센터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강로16길 30-9	김숙화	2016. 5. 의회 의결
33 (건물)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05-3 1305-4	247	247	35,369,000 (시가표준액)			"	(주)부성리 사이클링	
34 (건물)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07	247.5	247.5	17,287,000 (시가표준액)			"	"	
35	대	대	화원읍	천내리	446-2	388	388	856,704,000	2016년	화원읍 청사 주차장 조성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내동길 12	박동영 외5인	
36	대	대	화원읍	천내리	445-2	402	402	887,616,000			"	박동영 외6인	
37	대	대	화원읍	천내리	447-1	457	457	1,009,056,000			"	"	
38	대	대	화원읍	천내리	448-2	382	382	923,294,000			"	"	
39 (건물)	대	대	화원읍	천내리	445-2 446-2 447-1 448-2	436.68	436.68	106,113,240 (시가표준액)	2016년	마비정 벽화마을 경관립 조성	대구 달성군 구지면 수리리 615-1	오현수	
40	임	임	화원읍	본리리	1314	6,883	6,883	60,845,72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41	임	임	옥포면	기세리	산30-1	4,364	4,220	5,570,400	2016년	경찰 특공대 이전	대구 달서구 진천동 798	배경수외 5인	2016. 5. 의회 의결
42	임	임	옥포면	기세리	산30-5	1,785	887	1,215,190			경북 경산시 중산동 35-3 신성아파트 109동 1801호	신노옥	
43	임	임	옥포면	기세리	산31-1	8,628	8,628	11,734,080			대구 수성구 교학로 111, 102동 102호(만촌동, 산장맨션)	임천구 외 35명	
44	임	임	옥포면	기세리	산31-2	496	496	699,360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739	배도호	
45	임	임	옥포면	기세리	산31-3	793	793	1,118,130			대구 수성구 청수로 257, 1302동 1001호(황금동, 캐슬골드파크)	김성윤	
46	임	임	옥포면	기세리	산32	793	793	1,118,130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220	김경일	
47	전	전	옥포면	기세리	1-1	529	529	41,209,100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220	김경일	
48	구	구	옥포면	기세리	1-2	254	60	4,674,000				한국농어 촌공사	
49	답	답	옥포면	기세리	2-1	1,183	1,183	92,155,700			대구 달서구 월배로38길 6-10(상인동)	최일중	
50	전	전	옥포면	기세리	3	1,831	1,831	126,339,000			대구 달서구 상인동 171-1 상인대성스카이렉스 102동 1405호	신월년	
51	전	전	옥포면	기세리	4-1	1,402	1,402	132,208,600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633	김승준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					주 소	성 명	
52	구	구	옥포면	기세리	4-2	116	116	10,938,800	2016년	경찰 특공대 이전		한국농어 촌공사	2016. 5. 의회 의결
53	전	전	옥포면	기세리	5	1,302	1,302	89,838,000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87	전두만	
54	전	전	옥포면	기세리	6	608	608	41,952,000			대구 동구 신천동 919-5	장효준	
55	전	전	옥포면	기세리	7	1,220	1,220	84,180,000			대구 달서구 용산서로 9, 102동 1303호(용산동, 용산2차태왕타운)	서미자	
56	전	전	옥포면	기세리	8	889	889	61,341,000			대구 중구 남산로13길 17, 106동 2405호	배기호	
57	전	전	옥포면	기세리	9-1	569	569	69,190,400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655	임오권	
58	구	구	옥포면	기세리	9-2	572	572	69,555,200				한국농어 촌공사	
59	전	전	옥포면	기세리	11-1	506	506	61,529,600			대구 북구 영송로 85, 202동 802호(태전동, 한신중앙아파트)	김대식	
60	전	전	옥포면	기세리	12	565	539	37,191,000			대구 동구 신천동 919-5	장효준	
61	전	전	옥포면	기세리	13	1,177	1,152	74,188,800			대구 동구 신천동 119-5	장효준	
62	전	전	옥포면	기세리	14	621	621	39,992,400			대구 달서구 장기동 809 영남네오빌파크 102-503	박주영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					주 소	성 명	
63	전	전	옥포면	기세리	15	377	377	24,278,800	2016년	경찰 특공대 이전	부산 사하구 다대1동 382-3 자유아파트 109동 902호	주상호 외 1명	2016. 5. 의회 의결
64	도	도	옥포면	기세리	991	926	130	8,372,000				건설부	
65	도	도	옥포면	기세리	992	2,317	61	3,928,400				건설부	
66	구	구	옥포면	기세리	993-5	7,332	7	450,800				농림축산 식품부	
67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	3,471	3,471	17,702,100			대구 수성구 범어동 300 가든하이츠 105동 103호	조성재	
68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6	43,636	21,104	31,022,880			대구 서구 비산동 44-16	이종명 외 5명	
69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9	298	298	569,180			대구 달성군 화원면 설화동 739	배도호	
70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0	1,289	1,289	2,461,990			대구 수성구 청수로 257, 1302동 1001호(황금동, 캐슬골드파크)	김성윤	
71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2	893	666	1,025,640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 38, 103동 1704호(대실역청아람1단지)	장명지	
72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4	99	66	101,640			대구 달성군 화원면 설화동 919	김병호 외 3명	
73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3	6,347	6,347	51,410,700			대구 중구 삼덕동 3가 113-4	박종기 외 4명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					주 소	성 명	
74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4	2,380	2,380	10,115,000	2016년	경찰 특공대 이전	대구 달서구 월성동 364 월성보성타운 106-605	이범석	2016. 5. 의회 의결
75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5-1	8,132	8,132	12,198,000			대구 달서구 송현동 125-1	조정숙	
76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5-2	5,355	5,355	8,086,050			대구 남구 대명동 3018-1	김중국	
77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5-3	397	397	611,380			대구 동구 신암동 1028	현봉한	
78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5-4	793	793	1,237,080			대구 서구 내당동 1098	표용진	
79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6	595	595	3,159,450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병포리 13	임용득	
80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7	1,983	1,983	3,093,480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34-16	김석수	
81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8-1	1,686	1,686	8,868,360			대구 수성구 범어동 300 가든하이츠 105동 103호	조성제	
82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8-2	1,983	1,983	16,538,220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840	드로아교회 (양천석)	
83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8-3	298	298	2,485,320			대구 북구 태전동 300?	김석수	
84	대	대	화원읍	설화리	838-2	593	593	242,003,300			대구 달서구 송현동 125-1	조정숙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					주 소	성 명	
85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38-4	161	161	22,926,400	2016년	경찰 특공대 이전	대구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838-2	조정숙	2016. 5. 의회 의결
86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39	1,655	1,655	164,010,500			대구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838-2	조정숙	
87	대	대	회원읍	설화리	840	329	329	106,859,200			대구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840	드로아교회 (양천석)	
88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1	255	255	19,915,500			대구 달성군 회원읍 회원로 36, 106동 510호(창신맨션)	양천석	
89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2	836	836	31,768,000			대구 달성군 회원읍 회원로 36, 106동 510호(창신맨션)	양천석	
90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3	476	476	37,175,600			대구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887	곽종국	
91	구	구	회원읍	설화리	840-4	165	150	11,715,000				한국농어 촌공사	
92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5	922	922	59,008,000			대구 달성군 회원읍 회원로 36, 106동 510호(창신맨션)	양천석	
93	대	대	회원읍	설화리	840-6	96	96	21,955,200			대구 달성군 회원읍 비슬로 2346	한수화	
94	주차장	주차장	회원읍	설화리	840-8	240	240	70,152,000			대구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840	드로아교회 (양천석)	
95	구	구	회원읍	설화리	841-1	141	140	10,934,000				한국농어 촌공사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					주 소	성 명	
96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2	1,091	1,091	8,498,890	2016년	경찰 특공대 이전	대구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34-16	김석수	2016. 5. 의회 의결
97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3	774	774	6,029,460			대구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34-16	김석수	
98	임	임	회원읍	설화리	844	760	760	5,449,200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병포리 13	임용득	
99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7	557	557	43,501,700				재무부	
100	답	답	회원읍	설화리	841-2	32	31	2,421,100				국토교통 부	
101	도	도	회원읍	설화리	841-3	149	8	624,800				국토교통 부	
102	도	도	회원읍	설화리	841-4	4	1	78,100				건설교통 부	
103	구	구	회원읍	설화리	1129-3	3,790	374	29,209,400				농림축산 식품부	
104 (건물)	대	대	회원읍	설화리	838-2	254.8	254.8	100,713,680 (시가표준액)			대구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838-2	조정숙	
105 (건물)	대	대	회원읍	설화리	840	226.7	226.7	30,754,810 (시가표준액)			대구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840	드로야교회 (양천석)	
106 (건물)	대	대	회원읍	설화리	840-6	55.4	55.4	3,956,400 (시가표준액)			대구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838-2	조정숙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07 (건물)	잡	잡	유가면	용리	31-2	5,860	6,150	19,688,000,000 (사업비)	2017년	유스 호스텔 건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6. 5. 의회 의결
	잡	잡	유가면	용리	31-3	89							
	임	임	유가면	용리	산2-23	48							
	임	임	유가면	용리	산2-34	769							
108	전	전	다사읍	매곡리	840	1,865	873	76,824,000	2016년	다사 테니스장 조성	대구 서구 달서로16길 16-15, 7동 101호	신동월외 1명	
109	답	답	다사읍	매곡리	841	966	966	79,888,200			"	신동월	
110	답	답	다사읍	매곡리	842	1,031	1,031	72,582,400			대구 수성구 범어동 88-6 범어청구하이츠 105동1601호	김종욱	
111	답	답	다사읍	매곡리	843	926	926	76,580,200			"	김종욱	
112	수	채	현풍면	성하리	228-36	233	233	62,537,200	2016년 ~2017년	군민 체육관 중·개축	대구 중구 공평로 33	대구시	
113	수	채	현풍면	성하리	252-10	178	178	47,775,200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14 (건물)	체	체	현풍면	성하리	235-4	10,439	5,937.26	19,300,000,000 (사업비)	2016년 ~2017년	군민 체육관 증·개축	논공읍 금포리 33	달성군	2016. 5. 의회 의결
	수	체	현풍면	성하리	228-36	233					대구 중구 공평로 33	대구시	
	도	체	현풍면	성하리	250-4	8							
	도	체	현풍면	성하리	250-10	178							
	수	체	현풍면	성하리	716-33	8							
	도	체	현풍면	성하리	252-8	76							
	도	체	현풍면	성하리	251-2	10							
	도	체	현풍면	성하리	250-5	44							
	도	체	현풍면	성하리	716-34	350							
	도	체	현풍면	성하리	716-35	51							
	도	체	현풍면	성하리	400-3	81							
115	전	전	화원읍	본리리	1417	1,646	1,646	34,566,000	2016년	마비정 벽화마을 쉼터 조성	대구 서구 내당동 463-8 광장타운 202동 1203호	백태임	

2016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추 가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총 계			1건			660	800	2,010,000,000					
건물	대	대	유가면	봉리	600	660	800 (건축연면적)	2,010,000,000 (시설 건립비)	2017년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립 (기부채납)	대동금속 외 21개사 (기부채납자)		

위 치 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봉리 600번지



II. 검토의견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지역내 군소유의 공공청사부지를 활용하여 대구시와 근로복지공단, 기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우리군에 기부채납하여 무상사용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대상건물은 지상3층, 건물연면적 800㎡의 건물 1동으로 건립비용은 20억 1천만원입니다.

기업체가 밀집하고 있는 공단지역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례이며 관내 달성공단에도 설치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는 공동직장 어린이집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달성공단지역의 근로자를 위한 시설물인 점을 감안하면 계 획상달성공단지역내에 입지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관계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익(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 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1. 제 안 자 : 달성군수****2. 제안이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원 조정과 추진중인 지역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됨.

4. 예산총괄**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664,600	635,500	29,100
일반회계	계	649,000	620,000	29,000
일반회계		649,000	620,000	29,000
특별회계	계	15,600	15,500	100
의료급여기금		585	491	94
폐기물처리시설사업		7,516	7,500	16
기반시설		112	111	1
치수사업		7,132	7,157	△25
농공지구관리		255	241	14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664,600	635,500	29,100	4.58
일 반 회 계		649,000	620,000	29,000	4.68
	지방세수입	123,862	113,998	9,864	8.65
	세외수입	29,917	27,360	2,557	9.35
	경상적세외수입	19,486	19,486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0,431	7,874	2,557	32.47
	지방교부세	116,835	110,700	6,135	5.54
	조정교부금등	37,095	36,600	495	1.35
	보 조 금	186,026	176,220	9,806	5.56
	국고보조금등	124,705	116,427	8,278	7.11
	시·도비보조금등	61,321	59,793	1,528	2.5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5,265	155,122	143	0.09
특 별 회 계		15,600	15,500	100	0.65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664,600	635,500	29,100	4.58
일 반 회 계		649,000	620,000	29,000	4.68
	일반공공행정	49,219	50,386	△1,167	△2.32
	공공질서및안전	8,782	7,123	1,659	23.29
	교육	7,693	7,632	61	0.80
	문화및관광	65,555	53,504	12,051	22.52
	환경보호	12,383	12,146	237	1.96
	사회복지	164,321	159,115	5,206	3.27
	보건	12,175	11,972	203	1.69
	농림해양수산	42,550	42,233	317	0.75
	산업·중소기업	2,762	2,354	408	17.34
	수송및교통	130,382	118,138	12,244	10.36
	국토및지역개발	64,823	64,038	785	1.23
	예비비	14,784	18,048	△3,264	△18.09
	기타	73,571	73,311	260	0.36
특 별 회 계		15,600	15,500	100	0.65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664,600	635,500	29,100	4.58
일 반 회 계		649,000	620,000	29,000	4.68
	인건비	60,229	59,936	293	0.49
	물건비	32,330	32,466	△136	△0.42
	경상이전	231,986	227,178	4,808	2.12
	자본지출	301,827	274,560	27,267	9.93
	시설비및부대비	274,899	248,136	26,763	10.79
	민간자본이전	17,701	17,373	328	1.8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291	2,246	45	2.00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118	1,118	0	0.00
	자산취득비	5,818	5,687	131	2.29
	융자및출자	10	10	0	0.00
	내부거래	1,200	1,200	0	0.00
	예비비및기타	21,418	24,650	△3,232	△13.11
	예비비	14,784	18,048	△3,264	△18.09
	반환금기타	6,634	6,602	32	0.48
특 별 회 계		15,600	15,500	100	0.65

5. 주요 내용

□ 예산규모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55억원 보다 291억원(증 4.58%)이 증가된 6,646억원입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200억원 보다 290억원이 증액된 6,4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55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156억원입니다.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등) 수입이 기정예산 1,140억원에서 99억원 증액된 1,239억원,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273억원에서 26억원 증액된 299억원이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107억원 보다 61억원이 증액된 1,169억원이며,
증액된 61억원의 내용은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52억원, 특별교부세가 9억원 반영되었습니다.
- 조정교부금의 경우는 기정예산 366억원에서 5억원이 증액되어 371억원 이며
- 보조금의 경우는 기정예산 1762억원에서 국고보조금이 83억원, 시비보조금이 1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그리고 2015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등 보존수입이 1억원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입은 총 29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사업현황

○ 주요 투자사업(자체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기정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액
기획감사실	구(舊) 대평초등학교 부지매입	2,300,000	1,640,000	△660,000
자치행정과	시설전환 리모델링 사업	639,069	24,497	△614,572
회계과	군청사 주차장 확장 및 주민쉼터 조성	5,966,000	6,617,000	651,000
건설과	화원 설화리(한빛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78,704	258,704	80,000
건설과	화원 구라리(산47-2번지선)도시계획도로개설	800,000	1,400,000	600,000
건설과	화원 설화리 심원사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50,000	250,000
건설과	논공 휴게소(88고속도로)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0,000	200,000
건설과	다사 서재리 롯데마트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70,000	70,000
건설과	다사 세천리(세천교회 주변)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0	600,000	100,000
건설과	다사 서재리(595번지)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200,000	1,350,000	150,000
건설과	가창 단산리(샛터)도시계획도로 개설	700,000	900,000	200,000
건설과	가창 냉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600,000	1,800,000	200,000
건설과	옥포 본리(옥계1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0	800,000	300,000
건설과	구지 목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	400,000	200,000
건설과	옥포 본리1리(950번지선)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	700,000	400,000
건설과	도로굴착복구	1,992,800	3,992,800	2,000,000
건설과	가창 중주리 도로정비(교량)	100,000	800,000	700,000
건설과	유가 가태~본말간 도로 확포장	650,000	1,300,000	650,000

건설과	구지 예현리 마을안길 확장	40,000	240,000	200,000
건설과	화원 설화리 안길정비	50,000	12,422	△37,578
건설과	논공 노이리 안길정비	30,000	26,811	△3,189
건설과	가창 행정리 마을안길 포장덧씩우기	50,000	33,665	△16,335
건설과	가창 오리 인도설치	1,700,000	1,700,000	
건설과	화원 성산리 사문진로 인도정비	496,400	300,000	△196,400
건설과	하빈 하산~봉촌간 포장덧씩우기	300,000	205,977	△94,023
건설과	하빈 대평2리 두천마을 포장덧씩우기	80,000	34,362	△45,638
건설과	유가 양리 진입도로 확포장	400,000	700,000	300,000
건설과	구지 예현리 201-1번지선 도로확포장	370,000	470,000	100,000
건설과	가창 내상원 진입교량 설치	200,000	100,000	△100,000
건설과	현풍 상리 620번지 도로정비	100,000	150,000	50,000
건설과	옥포 김흥3리 1434번지선 도로정비	350,000	500,000	150,000
건설과	옥포 교항~신당간 도로확포장	150,000	350,000	200,000
건설과	유가 유곡리 도로확포장	25,000	425,000	400,000
건설과	구지 화산리 12번지선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20,000	320,000	300,000
건설과	설해대비 전진기지 설치	0	200,000	200,000
건설과	옥포 벚꽃2길 인도설치	0	1,000,000	1,000,000
안전방재과	옥포 김흥리 집푼골소하천 정비	198,560	11,000	△187,560
안전방재과	유가 용리 용봉소하천 정비	297,840	447,840	150,000
안전방재과	구지 오설리 오설소하천 상류 정비	496,400	596,400	100,000
안전방재과	구지 화산리 새담소하천 정비	496,400	20,000	△476,400
안전방재과	가창 단산리 단산소하천 정비	496,400	18,000	△478,400

안전방재과	현풍 상리 상리소하천 정비	0	200,000	200,000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300,000	365,000	65,000
교통과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	190,000	240,000	50,000
교통과	차선 및 횡단보도정비(단가계약)	280,000	430,000	150,000
교통과	미래전략사업부지 주차장 조성	600,000	1,358,283	758,283
교통과	지하철 1호선 환승주차장 조성	20,000	0	△20,000
교통과	현풍중앙로 인근 주차장 조성	700,000	0	△700,000
정책사업과	한국잼버리 행사장 기반 조성	683,970	723,970	40,000
정책사업과	(구)화원면허시험장 구조안전진단 용역	0	22,000	22,000
정책사업과	비슬산 유스호스텔 건립공사	9,762,800	17,435,000	7,672,200
정책사업과	비슬산 유스호스텔 건립공사	18,200	40,000	21,800
경제과	현풍공설시장 내 노후건물 재정비사업 보상비	1,300,000	1,676,042	376,042
문화체육과	유해성분 검출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4개소)(예산성립전 사용)	0	483,000	483,000
관광과	마비정 벽화마을 전망대 및 쉼터 조성 사업	400,000	0	△400,000
관광과	마비정 벽화마을 말 조형물 등 설치	0	400,000	400,000
관광과	화원동산내 일반·휴게음식점 건축공사	496,400	397,120	△99,280
관광과	현풍석빙고 주변 정비사업 부지 매입	0	350,000	350,000
보건과	달성군보건소 이전신축 설계비	1,500,000	1,300,000	△200,000
보건과	토지매입 보상등	0	200,000	200,000

○ 주요 경상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액
기획감사실	조직 및 인력 진단	40,000	26,100	△13,900
자치행정과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43,000	0	△43,000
정보통신과	달성군 스탬프 투어 앱 개발	220,000	161,125	△58,875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용 노후버스 교체지원	0	250,000	250,000
사회복지과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보강(장비보강)	0	42,710	42,710
사회복지과	시설관리공단(여성문화복지센터) 경상전출금	1,518,640	1,418,640	△100,000
사회복지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교복비 지원	34,200	24,000	△10,200
청소위생과	쓰레기 최종처리비(매립장, 소각장)	515,450	560,404	44,954
청소위생과	대형폐기물수거·처리대행수수료	0	396,244	0
청소위생과	—폐가구류 처리 대행수수료	62,493	81,721	19,228
교통과	지하철 1호선 환승주차장 조성 용역비	0	20,000	20,000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달성문화센터) 경상 전출금	1,410,312	1,294,312	△116,000
관광과	토마토축제 상호교류협력 초청여비	12,000	1,806	△10,194
관광과	컬러풀퍼레이드(예산성립전 사용)	0	1,020	0

○ 주요자체사업은

제설용 다목적관리차량 및 살포장치 구입 등 2억 2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용 노후버스 교체 2억 5천만원
비슬산 유스호스텔 건립공사 77억원
달성군민체육관 증·개축 공사비 중 전기·통신·소방분야
사업비 부족분 35억원
현풍 석빙고 주변 정비사업 부지 매입비 3억 5천만원
군청사 주차장 확장 및 주민쉼터 조성 사업비 부족분 6억 5천만원
유가 가태~본말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건설도시국 39개사업
108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 감액사업으로는

구 대평초등학교 부지매입 잔액 6억 6천만원 감액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7억 6천만원감액
구지 화산리 새담소하천 정비 4억 8천만원 등 17개 사업
2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의견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355억원 보다 4.58%인 291억원이 증가된 6,646억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290억원 증액중에서 지방세수입이 99억원, 세외수입이 2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며 군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지방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에서 세입예산 114,338백만원 계상된 것은 2015년도 결산에서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123,835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19,834백만원 인점을 감안하면 당초예산 편성시 소극적인 세입판단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금번 지방세수 증액부분은 당초예산시에 편성되어 군정추진사업에 투입 될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보면 추경예산의 증가액 291억원 중에서 인건비에 1.00%인 2억 9359만 7천원, 경상이전비가 16.52%인 48억 741만 6천원 자본지출에 93.80%인 272억 6705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와 예비비 및 기타는 감액조정되었습니다.

○ 부서별로는

주민복지국에 19%인 56억원,
건설도시국에 50%인 145억원,
정책사업단에 43%인 126억원 정도 반영되고

사회복지과에 50억원, 건설과 113억원,
안전방제과 19억원, 정책사업과 80억원,
문화체육과 39억원 규모입니다.

-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예산규모면에서도 크지 않고
세입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지방세수 증가분과 정부추경에 따른
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등 조정분을 반영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비슬산 유스호스텔등 각종 사업장의
부족사업비들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변경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정하고, 미이행사업 등에
대해 조기에 감액하려는 노력이 있어보입니다.

-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목별, 부기별,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0 월 4일
2. 제 출 자 : 채명지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구속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요청’ 공문과 관련하여, 구속으로 인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공소 제기되고 구속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하지 않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5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
-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조례안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급여 성격인 월정 수당을 제외한 수당인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 의회운영 자율권의 범위 내에서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 의로써의 의무와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명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10. 4.

발의의원 : 채명지 의원, 신영희 의원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구속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요청' 공문과 관련하여, 구속으로 인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소 제기되고 구속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하지 않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되고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및 구속된 날로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의정활동비(그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한다)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 이 공소 제기되고 형사소송법 제69조 에 따른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 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및 구속된 날로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의정활동비(그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한다)와 여 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 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 원의 예에 따른다.	제6조(준용) ----- ----- -----.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참고 2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9. 11.]

행자부, 구속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요청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요청하는 공문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경비’로서 서울시의회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소되어 구금 중인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다.
- *서울시,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강원 원주시, 충남 서산시 - 붙임 예시
- 김성렬 차관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과 구금된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참 고**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사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최초 도입

-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1.2.)

※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비판 등이 제기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12.24.)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4.4.)

□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5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4.15.)

□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7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6.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0월 4일

2. 제 출 자 : 채명지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재정적인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함 (안 제4조)
- 다.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이 취약한 노인,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노인 등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지원대상자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 응급호출시설 설치 등 안전확인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조
-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와 더불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예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사항,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안 제7조에서는 지원내용과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증진 시책 및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위반 및 저촉되는 것은 없으며,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채명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10. 4.

발의의원 : 채명지 의원, 신영희 의원

1. 제안이유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재정적인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4조)
- 다.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이 취약한 노인,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노인 등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지원대상자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 응급호출시설 설치 등 안전확인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조,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 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 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5.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6.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인 방문, 안부전화,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이하 본조에서 “홀로 사는 노인 등”이라 한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의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정신적·신체적 질병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민·관 기관 등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건강 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읍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군수가 인정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의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지원대상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계획에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신고·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법인,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0월 4일

2. 제 출 자 : 엄윤탁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달성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5.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제11조, 제34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등록된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군 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시 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엄윤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10. 4.

발의의원 : 엄윤탁 의원, 김성택 의원

1.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달성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제11조, 제3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한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 군을 관할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이하 본항에서 “사업”이라고 한다)의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법인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 지원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0 월 4일

2. 제 출 자 : 엄윤탁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달성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으로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고,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하게 함(안 제4조~제9조)
- 나. 부실공사 신고센터설치 및 신고 접수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 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서약서를 받고 부정당업자는 제재하도록 함(안 제13조~제14조)

5.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8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달성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안제4조부터 제9조까지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으로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고,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부실신고센터설치 및 신고 접수방법, 신고처리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서는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서약서를 받고 부정당업자는 제제하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업체의 부실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성실시공을 다하도록 유도하여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엄윤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10. 4.

발의의원 : 엄윤탁 의원, 김성택 의원

1. 제안이유

- 달성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으로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고,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하게 함(안 제4조~제9조)
- 나. 부실공사 신고센터설치 및 신고 접수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 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서약서를 받고 부정당업자는 제재하도록 함(안 제13조~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8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사의 관리·감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선임된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직속기관 및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대상 공사 이외의 1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군수는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의 부실측정)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4항에 따라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전이 필요할 경우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주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을 하기 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에 맞게 시공되는지를 점검·기록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55조에 따른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4항에 따라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명예감독관 운영) ① 군수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직후 해당 공사의 감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공사에 관한 정보를 그 명예감독관에게 설명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거나 민원 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시공 발견 즉시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명예감독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감시활동, 회의참석, 출장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업무담당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부실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

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그 밖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서의 접수나 제9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며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포함함)을 센터에 제출한 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군수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부정당업자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부실공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 소	
신고공사	사 업 명		현 장 위 치	
	공 종		발 생 일 자	년 월 일
부실공사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달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모든 시방서, 품질 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부실공사(용역)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은 물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 . .

○○○회사 대표 ○○○(인)

달성군수 귀하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정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추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별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

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별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별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별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별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 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⑤ 생략

[별표 2] <개정 2016. 9. 13.>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다.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의 사람(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1년 5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나. 삭제	
다.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라.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마.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0. 영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11. 영 제9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2.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6개월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3개월
13.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4. 영 제9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5. 영 제9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6.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7.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8.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9.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0. 영 제92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21. 영 제92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 금액비율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희망지원과)
3. 개정이유

-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해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제공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안 제9조제2항)

5.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19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위탁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해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제공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위·수탁자간 협의에 의하여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사무 처리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수탁자간 협의에 의하여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센터 운영사무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위탁사무 처리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수탁자간 협의에 의하여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센터 운영사무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위탁사무 처리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참고 1	관계법령(발췌)
-------------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청소위생과)

3. 제정이유

-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로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장소(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이외에 달성군수가 따로 정함. (안 제2조)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3)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5.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시·군·구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호~제8호 외에 추가하는 장소로써 문화예술진흥법의 공연시설·전시시설과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장소, 군립공원 등으로 명시하였음.

○ 일명 “푸드트럭” 으로 불리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는 우리군에 2호까지 신고 되어 있으나 기존 상권과 마찰, 창업희망자의 사업실패 우려, 창업비용(3천만원) 부담에 따른 진입장벽 등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저조한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추가로 영업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그 영업장소와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1.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이 호에서 “관광지등“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관광지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호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민간체육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민간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4.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

는 공원수탁관리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가.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를 받은 자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6.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7.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졸음쉼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4. “국립공원”이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문화체육과)
3.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한 통합체육회의 출범으로, 체육 단체의 정의 정립을 통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연계 강화를 도모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 개정, 같은 조 제7호 신설)

- 제2조제3호 및 제4호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의 정의 삭제
- 같은 조 제7호 통합체육회로 인한 “체육단체”의 정의 신설

나. (안 제20조 및 제21조 개정,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 제20조의 “전문체육의 진흥”을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하고,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 제21조제1항의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로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제11호부터 제15호 까지 신설
- 제22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제23조 “경비의 지원” 삭제

다. 제26조 및 제27조 “생활체육단체” 용어 삭제

5.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달성군 통합체육회의 출범으로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전문체육단체와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달성군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른 단순 자구 수정이 주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체육단체”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군 체육회, 군 관내 각 읍·면 지회와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제4장과 제20조의 제목 “전문체육의 진흥”을 각각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강구하여야 한다.”를 “강구하여야 하고,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민의 체육생활화운동의 전개
11.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12. 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13.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4.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제22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6조 및 제27조 중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를 각각 “체육단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1. ~ 2. (생략)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 경기 활동을 말하며, “체육단체”는 군 체육회 및 군 관내 각 읍·면 지회와 가맹단체를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하며, “생활체육단체”는 군 생활체육회 및 각 종목별 연합회를 말한다. 5. ~ 6. (생략) <u><신설></u> 제4장 전문체육의 진흥 제20조(전문체육의 진흥)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1. ~ 9. (생략) 10.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 경기 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 6. (현행과 같음) 7. “체육단체”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군 체육회, 군 관내 각 읍·면 지회와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제4장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제20조(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 ----- 강구하여야 하고,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의 지원) ①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 ----- -----. ②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주민의 체육생활화운동의 전개 11.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12. 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13.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4.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	개정안
제5장 생활체육의 진흥 제22조(생활체육의 진흥) (생략) 제23조(경비의 지원) (생략)	<u><삭제></u> <u><삭제></u> <u><삭제></u>
제26조(사전협의)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 장애인체육단체는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전협의) <u>체육단체</u> , ----- ----- ----- -----.
제27조(보고·검사)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u>체육단체</u> , <u>생활체육단체</u> , 장애인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보고·검사) ----- ----- <u>체육단체</u> , ----- ----- ----- ----- -----.

참고 1**상위 법령(발체)**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⑦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관광과)

3. 개정이유

-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상레저센터 운영에 따라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수상레포츠 이용요금을 일부 보완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다양한 수상레저기구 도입에 따른 요금 항목 추가 책정 필요

- 무동력(추가) : 수상자전거, 윈드서핑, 패들보드, 체험다이빙
- 동 력(추가) : 플라잉피쉬, 웨키와퍼, 바나나보트, 포파라치, 웨이크보드, 모터보트

나.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신상품군 신설

- 패키지상품 : 개별 레저기구 패키지 운영을 통한 가격인하상품
- 아카데미상품 : 개인, 그룹 대상 수상레저기구 강습포함상품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벨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조례안은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벨리 수상레저센터의 다양한 수상레저
기구 도입 및 신상품군 신설에 따른 이용요금을 책정하기 위
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별표4”의 수상레저기구 이용요금표에 무동력기
구인 수상자전거, 윈드서핑, 패들보드, 체험다이빙, 동력기구인
플라잉피쉬, 웨키와퍼, 바나나보트, 모터보트 등을 추가 신설
하였으며,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두 종류 이상을
묶어서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을 추가하는 등

○ 이용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 및 운영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이용객들의 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추
가된 항목들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

수상레저기구 이용요금(제17조 관련)

구 분		요 금	비 고
무동력	딩기요트	80,000원 이내	1인 2시간 기준
	카누/카약	30,000원 이내	
	고무보트(래프팅)	30,000원 이내	
	수상자전거	30,000원 이내	
	윈드서핑	30,000원 이내	
	패들보드	30,000원 이내	
	체험다이빙	50,000원 이내	
동 력	수상 오토바이	50,000원 이내	1인 1회 기준
	수상 스키/보드	50,000원 이내	
	플라잉피쉬	30,000원 이내	
	웨키와퍼	30,000원 이내	
	바나나보트	30,000원 이내	
	포파라치	30,000원 이내	
	웨이크보드	30,000원 이내	
	모터보트	100,000원 이내	
패키지상품		80,000원 이내	
아카데미(강습)상품		100,000원 이내	

상기 구분 이외의 수상·수변레저기구 및 그 밖의 체험시설 등의 이용요금은 유사한 구분의 요금 범위 내에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장비 보관동 및 계류장 시설 이용요금(제17조 관련)

구분	금액	기준	비고
장비 보관동	50,000원 이내	▪ 면적(1㎡당) 1개월 기준	
샤워장이용	5,000원 이내	▪ 1인 1회	
계류장 시설	20,000원 이내	▪ 선박길이 5m 미만인 선박 ▪ 일반 개인 및 단체 소유 수상 오토바이 등 소규모 동력 장비 ▪ 1일 기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수상레저기구 이용요금(제17조 관련)

구분		요금	비고
무동력	딩기요트	80,000원 이내	
	카누/카약	30,000원 이내	
	고무보트(래프팅)	30,000원 이내	
동력	수상오토바이	50,000원 이내	
	수상 스키 / 보드	50,000원 이내	

· 1인 2시간 기준

장비 보관동 및 계류장 시설 이용요금(제17조 관련)

(생략)

개정안

수상레저기구 이용요금(제17조 관련)

구분		요금	비고
무동력	딩기요트	80,000원 이내	1인 2시간 기준
	카누/카약	30,000원 이내	
	고무보트(래프팅)	30,000원 이내	
	수상자전거	30,000원 이내	
	윈드서핑	30,000원 이내	
	패들보드	30,000원 이내	
동력	수상오토바이	50,000원 이내	1인 1회 기준
	수상스키 / 보드	50,000원 이내	
	플라잉피쉬	30,000원 이내	
	웨키와퍼	30,000원 이내	
	바나나보트	30,000원 이내	
	포파라치	30,000원 이내	
	웨이크보드	30,000원 이내	
	모터보트	100,000원 이내	
패키지상품		80,000원 이내	
아카데미(강습)상품		100,000원 이내	

상기 구분 이외의 수상·수변레저기구 및 그 밖의 체험시설 등의 이용요금은 유사한 구분의 요금 범위 내에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장비 보관동 및 계류장 시설 이용요금(제17조 관련)

(현행과 같음)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농촌지도과)

3. 폐정이유

-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달성군농업인조직육성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달성군농업인조직육성기금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조직육성기금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폐지조례안은

농업인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99년 10월 9일 제정·시
행하여 왔으나 기금 보유액이 10억1천3백만원으로써,

○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 수익성 악화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
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호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